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3) 공연장 외 공연

2026.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

제1장

안내서 활용 안내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구분..... 5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8

제2장

참고 법령 및 규정

1. 공연법..... 13
2. 산업안전보건법..... 20

제3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처리 절차

1.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23
2.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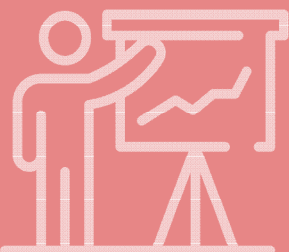
제4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가이드

1. 공연 계획서..... 27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0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3
4.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43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54
6.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3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 배치계획..... 66
8.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3

[별첨1] 재해대처계획 작성 양식

[별첨2] 재해대처계획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서 활용 안내

-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구분 _5
-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_8



제1장 안내서 활용 안내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구분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별 주요 포함 내용

- 소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심으로 안내
- 중·대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이상의 등록 공연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이하 공연장 외 공연)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구분	소규모 공연장	중·대규모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	○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
-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	○
- 안전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	○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	○
-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	○
-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	○	○
- 공연계획서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
* 객석 수 500석 미만인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교육 계획 중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계획만 안내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활용 방법

1 소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미만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주 관리 인력이 부족한 공연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관 공연 등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 통상적으로 객석 수 500석 미만의 민간 공연장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안전 법률에 관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객석 수 500석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주 관리조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상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은 “중·대규모 공연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2 중·대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이상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주 관리 조직과 인력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 통상적으로 객석 수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안전 법률에 관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객석 수 500석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주 관리 조직과 인원이 부족하여 자체 인력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공연장인 경우, 소규모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에서 대관 공연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단, 500석 이상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전체 포함해야 함)

3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

-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의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올바른 관리 조직 구성과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무대시설 및 장치와 많은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의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실내 시설 : 체육관, 전시장, 강당 등
- 실외 장소 : 운동장, 광장, 공원, 해수욕장 등이 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주체와의 공동 신고를 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1천명 이상의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연을 하려는 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시설 대관 및 장소 사용승인 시 안전 고려 사항)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1) 재해 유형별 예방 대책 수립 가이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에서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전문 공연장(등록 공연장)에서의 재해 유형과 공연을 위한 임시 구조물 및 장치 설치로 운영되는 공연(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에서의 재해 유형 분류

재해 유형	유형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주요 내용
화재	- 건축물 일반 화재 - 전기 화재 - 공연 특수효과 및 소품으로 인한 화재	- 일반 화재, 전기 화재, 특수효과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지진	- 무대공간에서 무대시설 낙하, 전도 - 객석 및 관객 대기 공간에서의 구조물 낙하, 전도	- 지진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관리 계획
무대시설 등 안전사고	- 그리드 및 갤러리에서의 낙하 - 상부 무대시설 충돌, 낙하 - 하부 무대시설 추락, 충돌 - 무대조명·음향 시설 낙하, 전도 - 전기설비 과부하	- 공연장 자체 무대시설인 상부 무대시설(장치봉, 조명봉 등), 하부 무대시설(승강무대, 연주승강무대 등)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 무대조명·음향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특수효과 안전사고	- 불꽃 및 화염 효과로 인한 안전사고(화재, 화상 등) - 연무 효과로 인한 안전사고(질식, 미끄러짐 등) - 레이저 효과로 인한 안전사고(안구 손상, 화상 등) - 드론 추락	- 특수효과 사용 시 피난안내에 관한 규정 안내 - 특수효과별 운용 및 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
무대세트 및 장치 안전사고	- 무대세트 및 장치와 사람의 충돌 - 무대세트 및 장치에서 추락 - 작업자 안전사고	- 공연장에서 무대세트 및 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정보(하중, 치수, 위험물 등)에 관한 사항 - 공연단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안전 관리 사항(이동 동선, 무대장치 위험요인, 연출 안전, 보호구 착용 등)

2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재해 유형

재해 유형	유형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주요 내용
화재	- 구조물 및 시설 일반 화재 - 전장품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 공연 특수효과로 인한 화재	- 일반 화재, 전기 화재, 특수효과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지진	- 지진으로 구조물 붕괴, 전도, 낙하 등에 의한 인명 사고	- 지진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관리 계획
악천후	- 폭우로 인한 구조물 붕괴 및 감전 사고 -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사고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 폭우, 강풍,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한 관리 계획
구조물 사고 (특수효과 포함)	- 무대 및 조명타워 붕괴, 전도에 의한 인명 사고 - 무대장치 추락, 낙하, 부딪힘 등에 의한 인명 사고 - 특수효과에 의한 인명 사고(불꽃, 화염, 연무, 레이저, 고압수 등)	- 가설구조물(무대 및 조명타워 등)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 특수효과 장치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 *특수효과 범위 : 불꽃, 화염, 연무, 레이저, 고압수, 트랩 등
관객 사고	- 관객 혼잡 사고(혼잡에 의한 넘어짐, 압사 등) - 기타 관객 사고(넘어짐, 관객 건강 이상, 미아 사고 등) - 돌발 사고(관객 난입, 아티스트 돌발 행동 등)	- 객석구역(좌석, 통로, 난간, 계단 등) 위험 요인 관리 계획 - 공연 돌발 상황(관객 난입, 출연자 돌발행동 등) 예방 관리 계획 - 다중운집 발생 해소를 위한 관리 계획(수용인원 제한, 분산 입·퇴장 등) - 다중운집 인파 시, 관객 인명피해를 위한 대처 방안(관객 통제, 피해 방지 조치 안내 등)

2)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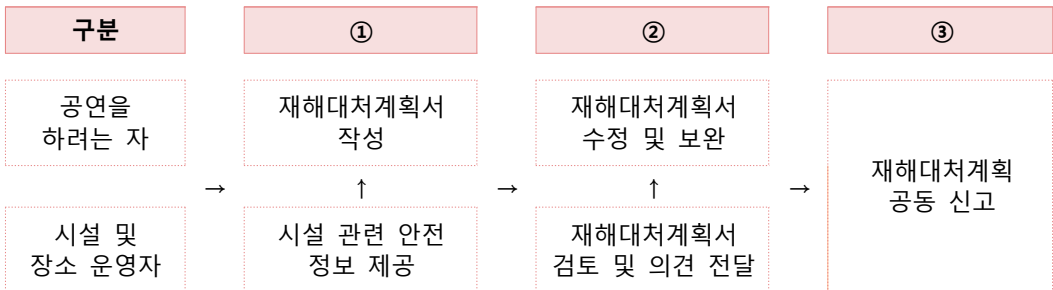
①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 범위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축제나 행사 중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으며, 1천명 이상의 관객이 해당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해당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처계획 공동 신고 관련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법령 및 규정

1. 공연법 _13
2. 산업안전보건법 _20



제2장 관련 법령 및 규정

1. 공연법

1)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법 제10조의2)

-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자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고 시기)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재신고)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을 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공연계획서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 계획

3)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고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 (안전관리비의 용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공연법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 (사용내역서 제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해당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담당자)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 예상되는 관객 수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관리조직 업무 수행 기록)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안전교육 강사 요건) 위의 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자 안전교육 : 자격 요건 없음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전교육 내용) 안전교육의 내용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다.

4 피난안내도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 시설이나 장소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연 시설이나 장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설치 위치) 공연 시설 및 장소의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 내용)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크기) 피난안내도는 B4(257 mm × 364 mm) 이상의 크기로 하며,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m² 이상인 경우에는 A3(297 mm × 420 mm)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 시설 및 장소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 (언어)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5 피난안내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난안내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피난안내 시기) 관람객이 공연 시설 및 장소에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 (포함 내용) 피난안내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언어)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은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6 사고보고의무

공연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연 시설 및 장소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한 사고 범위)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의 낙하·추락·전도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해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사고 보고 방법)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2. 산업안전보건법

1) 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설 안전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작업 안전) 사업주는 하역, 운반, 해체, 중량물의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주의 작업 중지 등

- (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다.)
- (도급인의 안전관리 역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 점검
 - 특별안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확인
 -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화재,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처리 절차

1.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_23
2.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_25



제3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처리 절차

1.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1) 신고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
되, ①공연장운영자작성사항, ②공연시작성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공연계획서
-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6)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 배치계획
- 8)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	-----	----------	----

① 공연장운영자작성사항	③ 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작업 ☐ 수학 ☐ 양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작공일	개관일			
	④ 공연장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 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연적	m ² (평)	무대면적 (무대채공연적)	m ² (평)
			무대기계 ·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비단면적	m ²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② 공연 시작 작성사항	⑤ 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⑥ 공연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m ²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 · 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 변경
사항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공연의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
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첨부	수수로 함함
------	-------	-----------

<공연법 시행규칙 서식>

2)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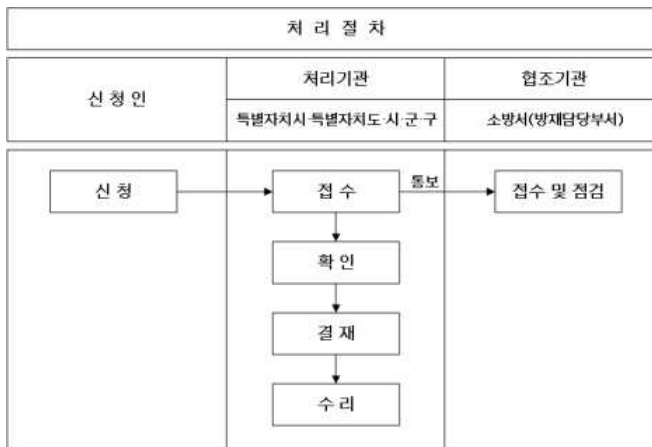
2.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1) 재해대처계획 적정성 검토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신고 전,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같이 그 내용이 실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안전정보를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시 본 안내서 [별첨]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2) 재해대처계획 신고 처리 절차

-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확인/결재/수리를 통해 행정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문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관할 처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이러한 요구 절차에 응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재해대처계획 작성 가이드

1. 공연 계획서 _27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_30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_33

4.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_43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_54

6.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_63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_66

8.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_73



제4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가이드

1. 공연계획서

1)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연의 준비 단계부터 운영, 철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연계획서 작성 방안

포함 사항	작성 방안
공연 행사명	공연의 명칭을 작성한다.
공연 기간	공연 준비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공연 전체 기간을 작성한다.
공연 장소	공연 장소 또는 공연 시설 명칭과 주소를 작성한다.
주최 및 주관	공연 주최 및 주관 단체명을 입력한다.
보험 가입	공연 시설 및 관객 등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 또는 행사공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 명칭, 가입금액 보장범위를 작성한다.
안전관리자	공연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관람 예상 인원	예상 최대 관객 수와 좌석 및 스탠딩석 객석 수를 작성하며, 스탠딩석은 구역 면적을 함께 기재한다.
예상 최대 밀집도	스탠딩석이 운영되는 경우, 순수 객석 면적 대비 예상 최대 관객 수로 밀집도를 산출하여 작성한다.
매표 방법	온라인 티켓 예매, 현장 예매, 무료 선착순 입장 등 매표 방법을 기재한다.
주요 출연진	공연 출연진을 작성하며, 여러 출연진이 있는 경우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출연진을 작성한다.
공연 일정	공연 일자별 관객 입장, 퇴장 등 주요 일정을 작성한다. 관객 입퇴장이 자유로운 공연일 경우 순간 최대 관객이 예상되는 시간대를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공연 장소 배치도	객석이 되는 공간의 좌석과 주요시설(소방시설, 전기시설, 무대시설 등)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그림을 기입한다.

2) 공연계획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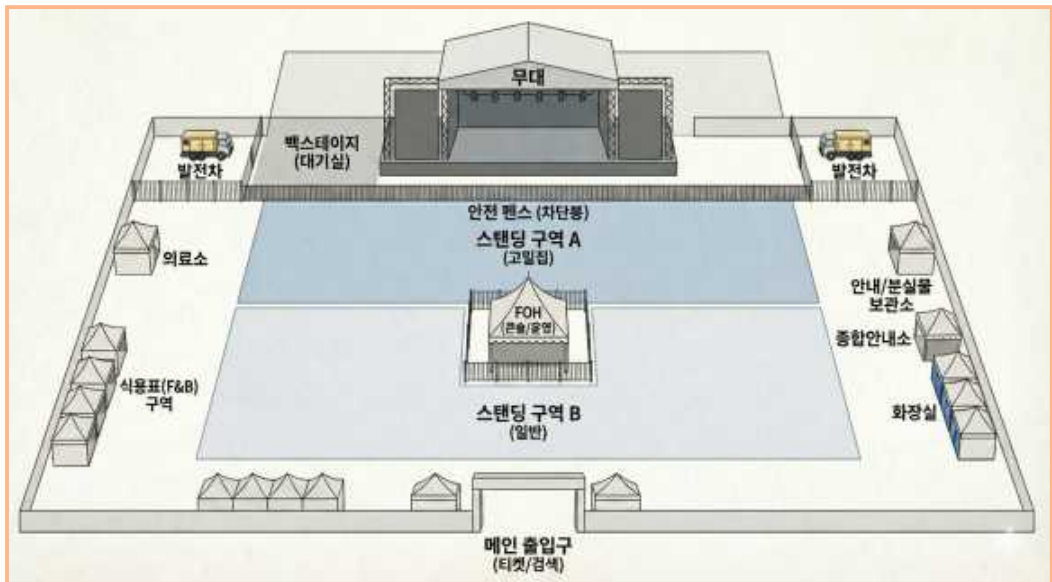
1 공연 계획 일반 사항

• 공연 행사명		
• 공연 기간		
- 공연 준비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공연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공연 철거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공연 장소		
• 주최 및 주관		
• 보험 가입		
- 보험 정보	000보험 (보험 계약 사본 별첨)	
- 보험 가입 금액		
- 보험 보장 범위		
• 안전관리자		
- 안전총괄책임자	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름 (연락처), 이름 (연락처)	
• 관람 예상 인원		
- 예상 최대 관객 수 및 시간대	000명 / 00월 00일 00:00~00:00))	
- 객석 수	좌석 수	000명
	스탠딩석(면적)	000명 (000m²)
• 예상 최대 밀집도(스탠딩 구역)		000명/m²
• 매표 방법		(내용 작성 : 온라인 예매, 현장 예매 등)
• 주요 출연진		(내용 작성)

2 공연 일정

시간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비고
00:00	관객 입장	관객 입장	관객 입장	
00:00	공연 시작	공연 시작	공연 시작	
00:00	000공연	000공연	000공연	
00:00	000공연	000공연	000공연	최대 관객 예상
00:00	000공연	000공연	000공연	
00:00	공연 종료	공연 종료	공연 종료	
00:00	관객 퇴장	관객 퇴장	관객 퇴장	

3 공연 배치도 예시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1) 관리 조직도

- 조직도란 조직 내의 지휘, 명령 등의 계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표를 말한다. 작성할 때는 기능별 업무를 구조화한 표 형식을 권장한다.
- 조직도 작성 시에는 공연을 하려는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과 공연을 하려는 자가 속한 조직의 기능별 업무와 연락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조직의 팀별 담당자에 대한 역할과 구체적인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한다.

① 공연을 하려는 시설 관리 조직도 예시



조직	팀장	인원	담당업무
대관 담당팀	0 0 0	00명	대관 계약, 시설 사용 조건 협의 등
시설 관리팀	0 0 0	00명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안전 관리팀	0 0 0	00명	안전 점검 및 위험요인 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

2 공연을 하려는 자의 관리 조직도 예시



조직	팀장	인원	담당업무
기획총괄팀	0 0 0	00명	공연 전체 기획, 일정·예산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공연기술팀	0 0 0	00명	무대,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설치 운영 등
관객관리팀	0 0 0	00명	관객 동선·대기열·입·퇴장 관리 수행 등
공연홍보팀	0 0 0	00명	공연 관련 대외 홍보, 안내방송 내용 작성 등
행정지원팀	0 0 0	00명	계약·회계·인력·물품 등 행정 업무를 처리 등
비상대응팀	0 0 0	00명	화재·사고 등 비상상황 시 보고·지휘체계 운영 등

2) 공연 참여 업체 정보

- 주최 및 주관을 포함하여 여러 위탁 업체가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각 위탁업체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관리 조직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공연 참여 업체 정보 예시

구분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연출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무대감독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무대디자인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경호업체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레이저 설치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트러스 설치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무대 바닥 설치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음향 장비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조명 장비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영상 장비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특수효과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발전차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영상장비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중계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악기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사설구급대	0 0 0 0 0 0	0 0 0	010-0000-0000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체계 및 비상 연락망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비상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각 조직의 고유 업무와 역할에 적합한 인력과 부서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비상 대응 조직은 후술하는 비상 대응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공연을 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 시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 관리 조직 및 공연 참여 업체의 담당자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체계로 마련하여야 한다.
-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비상 대응 조직별 비상 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상황 시 총괄 지휘 및 대응 지시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안전총괄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부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체계 예시

관리 조직	책임자	연락처	인원	담당업무
총괄상황반	000	010-000-0000	00명	비상상황 총괄 지휘, 상황 파악 및 대응 지시 등
사고진압반	000	010-000-0000	00명	화재·사고 초기 진압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
신고및협력반	000	010-000-0000	00명	관계기관 신고·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등
관객대피반	000	010-000-0000	00명	관객 대피 안내·유도 및 출입구·동선 관리 등
응급구호반	000	010-000-0000	00명	부상자 응급처치, 구호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 지원 등
기타지원반	000	010-000-0000	00명	출연진 대피 안내, 현장 운영 지원 등

2 비상연락망 예시

비상 조직	성명	연락처	소속(업체명)	임무 및 역할	비고
총괄 상황반	000	010-000-0000	00000000	비상상황 대응 총괄	안전총괄책임자
	000	010-000-0000	00000000	무대 및 시설 대응	안전관리담당자
	000	010-000-0000	00000000	출연진 및 관객 대응	안전관리담당자
	000	010-000-0000	00000000	상황전파·공유·기록	
사고 진압반	000	010-000-0000	00000000	사고 진압 총괄	책임자
	000	010-000-0000	00000000	무대 사고 대응	
	000	010-000-0000	00000000	무대 사고 대응	
	000	010-000-0000	00000000	객석 사고 대응	
	000	010-000-0000	00000000	기타 시설 사고 대응	
신고 및 협력반	000	010-000-0000	00000000	신고 및 협력 총괄	책임자
	000	010-000-0000	00000000	신고 및 상황 보고	
	000	010-000-0000	00000000	대피 방송 실시	
	000	010-000-0000	00000000	긴급 차량 통로 확보	
관객 대피반	000	010-000-0000	00000000	관객 대피 총괄	책임자
	000	010-000-0000	00000000	출입문 개방 및 위험구역 통제	
	000	010-000-0000	00000000	A 구역 관객 대피 관리	
	000	010-000-0000	00000000	B 구역 관객 대피 관리	
	000	010-000-0000	00000000	C 구역 관객 대피 관리	
응급 구호반	000	010-000-0000	00000000	응급 구호 총괄	책임자
	000	010-000-0000	00000000	응급 처치 실시	
	000	010-000-0000	00000000	환자 이송 및 병원 인계	
	000	010-000-0000	00000000	환자 이송 및 병원 인계	
기타 지원반	000	010-000-0000	00000000	기타 지원 총괄	책임자
	000	010-000-0000	00000000	출연진 대피	
	000	010-000-0000	00000000	현장 운영 지원	

3 유관기관 정보 예시

협조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00구청	문화체육과	000	000-0000-0000	
00병원	응급실	000	000-0000-0000	중상환자
00병원	0000과	000	000-0000-0000	경상환자
00소방서	0000과	000	000-0000-0000	
00경찰서	0000과	000	0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00과	000	000-0000-0000	
한국전기안전공사	0000과	000	000-0000-0000	
한국가스안전공사	0000과	000	000-0000-0000	
00교통공사	00역	000	000-0000-0000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2) 공연 중단 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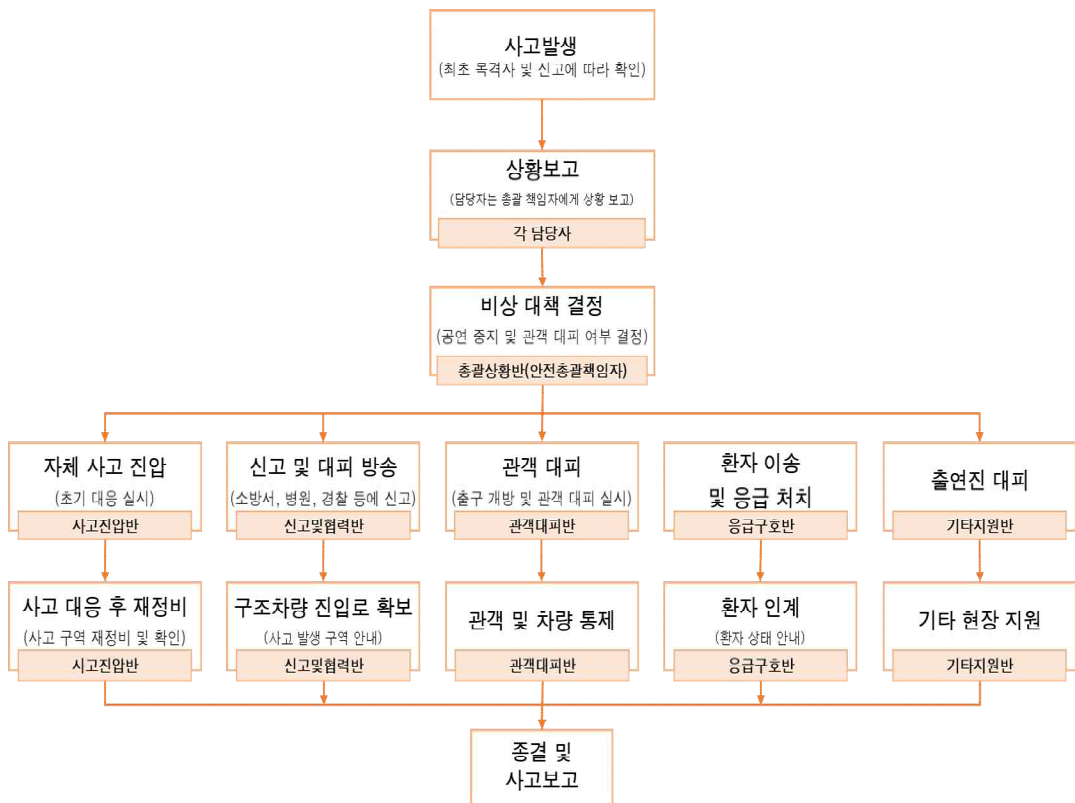
- 공연 중 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기 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발생하면 진행 중인 공연을 중단하여야 하므로, 공연 중단 권한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연 중단 권한은 안전관리조직의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공연 중단이 결정되어야 한다.
- 공연 중단 관리 계획 예시

구분	공연 중단 관리 계획
책임자 지정	- 책임자(정) : 000 (안전총괄책임자) - 책임자(부) : 000 (안전관리담당자))
공연 중단 기준	※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연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① 화재 : 공연장소 내부 및 외부 화재로 인해 공연 장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공연장소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인명 피해 : 관객, 출연자 안전사고로 피해자 발생 하거나 관객 밀집 급상승 등 인파사고 징후가 나타날 경우 ④ 설비 이상 : 무대장치 결함 및 이상 작동, 특수효과 오작동 등 ⑤ 긴급상황 : 응급환자 발생, 무질서·폭력 징후, 관객 난입 등
공연 중단 체계	① 위기 징후 확인(화재 감지 신호, 담당 직원 보고 등) ② 공연 중단 판단 ③ 공연 중단 및 관객 대피 명령
단계별 중단 조치	(1단계) 음향 감쇄 및 경고 방송 → (2단계) 공연 일시 중단 → (3단계) 공연 취소 결정 → (4단계) 관객 대피

3)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는 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의 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 조직이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과 절차를 의미하며, 최초 발견자로부터 시작하여 상황보고, 비상대책 결정, 각 반별 조치 시행을 거쳐 상황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연 전 사전점검 및 훈련을 통해 각자가 비상 대응 조직 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와 자신의 임무 및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영 여건과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사고 대응 총괄 체계 예시



2 주요 재해별 위기 대응 체계 예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공연장소 내부 화재 발생 시)	비상 조직
- 화재 목격자는 초기 진화가 가능한 규모의 화재인 경우, 선 조치 후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화재 목격자는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연락망에 따라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총괄 책임자는 초기 진화가 불가한 화재 발생 보고를 받으면, 즉시 공연 중단과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총괄책임자
- 사고진압반은 위험구역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대응한다.	사고진압반
- 신고 협력반은 비상 연락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고, 경보기 작동 및 피난 안내를 통해 안내요원 지시에 따라 외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신고협력반
- 관객대피반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관객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정해진 출입구로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즉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대피 완료 후 잔류 관객이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응급구호반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공연장소 외부 화재 발생 시)	비상 조직
-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건축 방재실로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총괄 책임자는 화재의 규모와 위치를 판단하여, 공연을 중단과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총괄책임자
- 사고진압반과 신고 협력반은 화재 발생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경로를 확인 후, 비상 대응 조직에게 전파한다.	사고진압반 신고협력반
- 관객대피반은 전달받은 안전한 대피경로의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관객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 유도 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전달받은 안전한 대피경로로 출연진을 즉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대피 완료 후 잔류 관객이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응급구호반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안내 문구	
-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외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총괄 책임자는 지체없이 공연을 중지시키고 비상 상황 조치 계획을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 신고협력반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고 관객이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자리에서 대기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신고협력반
- 사고진압반은 신속하게 정전의 원인(화재, 붕괴, 전기사고 등에 의한 정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고한다.	사고진압반
- 관객대피반은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손전등 및 경광봉 등 안내용 장비를 갖추고 비상 위치로 이동한다. - 장기간 정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관객대피반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관객을 정해진 출입구로 대피시킨다.	관객대피반
- 출연진 관리반은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대피 완료 후 잔류 관객이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응급구호반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안내 문구	
- (정전 발생 직후)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모두 제자리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스태프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상 조명을 작동할 예정입니다.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 대피 필요)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천천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전 복구 후) 관객 여러분, 방금 전 발생한 정전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의 협조 덕분에 안전하게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공연이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최초 지진 인지자는 즉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총괄 책임자는 즉시 공연 일시 중지를 선언하고 비상 상황 조치 계획을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 신고협력반은 지진발생에 대한 상황을 스크린 및 PA시스템을 통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소방서에 신고한다.	신고협력반
- 관객대피반은 관객이 몸을 숙이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자를 무대장치가 없는 곳으로 즉시 이동시켜 견고한 구조물 아래 몸을 낮추고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CCTV 등을 통해 낙하물, 구조물 손상 등을 모니터링한다.	사고진압반
- 신고협력반은 흔들림이 멈추면 관객에게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집결지로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기타지원반
- 관객대피반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관객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정해진 출입구로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즉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안내 문구	
- (지진동 발생 직후) 현재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때까지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가능한 경우 낮은 자세로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 (흔들림 종료 후 대피)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00색 조끼를 입고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공연장 바깥 비상집결지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여진 발생 시) 현재 여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동을 멈추고 낮은 자세로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흔들림이 멈춘 후 안내에 따라 다시 이동을 재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집 인파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종합상황실에서는 CCTV 등을 통해 관객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한다.	종합상황실
- 안전관리요원은 관객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객을 관리하여야 하며, 혼잡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총괄책임자
- 관객대비피반은 즉시 해당 구역으로 출동하여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관객 흐름을 분산시키고 혼잡구역을 통제한다.	관객대피반
- 신고협력반은 관객을 안정시키고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신고 및 협조를 요청한다.	신고협력반
- 압사 등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반은 응급의료인력과 함께 해당 위치로 출정하여 응급처치 및 환자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 출연진관리반은 출연진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어 잠시 공연 중단을 요청하고 관객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	출연진관리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사고 대응 완료 후, 해당 구역을 재정비하고 추가 부상자나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안내 문구	
- (혼잡 예상 시)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연장 00구역에 관객이 물리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주변 관객분들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동시 밀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00색 조끼를 입고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잡 발생 시)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많은 인원이 밀집하여 압사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뒤쪽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응급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인원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 또는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상황을 신속히 보고한다.	총괄책임자
- 신고협력반은 응급의료인력이 환자에게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신고협력반
- 출연진관리반은 출연진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어 잠시 공연 중단을 요청한다.	기타지원반
- 응급구호반은 즉시 응급의료인력과 함께 응급의료장비(AED 등)를 가지고 응급환자에게 접근하여 환자의 상태(의식, 호흡, 외상여부 등)를 확인한다. - 응급의료인력은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 이송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 응급구호반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급차를 통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응급구호반
- 사고진압반은 응급환자 이송 후, 해당 구역을 재정비하고 추가 부상자나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안내 문구	
- (환자 발생 직후)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객석 00 구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이 즉시 출동하여 조치 중이니, 관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조를 위해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주변 통로를 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급 환자 조치 완료 후)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발생했던 응급환자 상황은 현재 안전하게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공연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 공연 주최 및 주관은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법 제11조의6에 따라 즉시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비상 연락망의 관할지자체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을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의 경우
- 공연 중에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악천후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

- 막연히 "비가 많이 오면"이라고 적지 말고, 구체적인 수치(풍속, 강수량)를 기준으로 단계별 행동 요령(주의 및 구조물 보강→경고→중단)을 수립해야 합니다.
- 특히 강풍 기준은 무대 구조 검토 시 적용된 설계 풍속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강풍 : 가설 구조물(무대, 텐트)의 전도 방지와 낙하물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 폭우 : 전기 설비의 침수 및 누전 방지, 배수 계획, 미끄럼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 폭염 : 관객 및 스태프의 온열 질환 예방(식수, 그늘막)과 장비 과열 방지 대책을 포함합니다.
- 행사 3일 전부터 기상청 예보를 수시 확인하고, 행사 당일에는 현장에 풍속계를 비치하여 실시간 풍속을 측정한다.
- 우천 및 강풍 대응 기준 예시

단 계		우 천	강 풍
계측방법		실시간 기상 예보 관측	무대 상단 및 객석 밀집 지역에 풍속계 설치
1 단계	상황	시간당 5mm 미만	순간 최대풍속 5㎧ 미만
	대응	계획된 일정 정상운영	
2 단계	상황	시간당 5mm~10mm 미만	순간 최대풍속 5㎧~8㎧ 미만
	대응	- 우천용품 지급 - 각종 전선 방수대책 시행 - 무대 바닥 점검 및 미끄럼방지 추가 조치 - 무대장치 및 무대바닥 방수 커버 대기	- 구조물 및 시스템 추가 안전점검 진행 - 전도방지조치 확인 및 추가 고정 - 전선 마감 확인 · 재고정 - 와이어 구조물 지상 이동
3 단계	상황	시간당 10mm~15mm 미만	순간 최대풍속 8~10㎧ 미만
	대응	- 우천 주의 안내방송 실시 - 무대 및 시스템 방수 커버 설치 - 시스템 별 전기 및 전력 점검 - 위험구역 차단	- 강풍 주의 안내방송 실시 - 전도 및 낙하 예상 시스템 및 구조물 결속 보강 - 위험구역 차단
4 단계	상황	시간당 15mm 이상	공연 3시간 전 시간당 10㎧ 이상
	대응	- 관객 대피 안내 방송 실시 - 공연 일시 중단 및 일정 조정 - 야외 전기사용 중지 - 전기시설 차단기 OFF	- 관객 대피 안내 방송 실시 - 공연 일시 중단 및 일정 조정 - 몽골텐트 등 철거

• 폭염 대응 기준 예시

단 계		내 용
확인 방법		폭염 특보 또는 기상청 날씨누리
1단계 (관심)	상황	일 최고 체감온도 31℃ 2일 이상 예상 시
	대응	- 충분한 식수 공급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감군에 대한 조치 - 관객 대상 온열질환 등 이상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응급구호소 위치 안내
2단계 (주의)	상황	일 최고 체감온도 33℃ 2일 이상 예상 시 [폭염주의보 발령]
	대응	- 1단계(관심) 대응 조치 유지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 등 휴식시간 추가 제공 - 공연 준비 일정 조정 - 식수 음료 수시 제공
3단계 (경고)	상황	일 최고 체감온도 35℃ 2일 이상 예상 시 [폭염경보 발령]
	대응	- 2단계(주의) 대응 조치 유지 - 공연자 중 민감군에 대한 공연 참여 제한 권고 - 의료진의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이상증세 발생 시 긴급 의료 지원
4단계 (위험)	상황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1일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대응	- 3단계(경고) 대응 조치 유지 - 낮 공연 중단 또는 저녁 시간대* 공연 일정 변경 검토 *저녁 시간대의 최고 체감온도를 고려하여 판단

4.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려는 자는 재해 유형에 따라 공연장소 시설 및 운영 환경에서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안내서에서는 위험 요소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요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에 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공연장소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연장소 안전 관리 계획 등 일반 관리 사항

재해 유형별 세부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공통 관리 사항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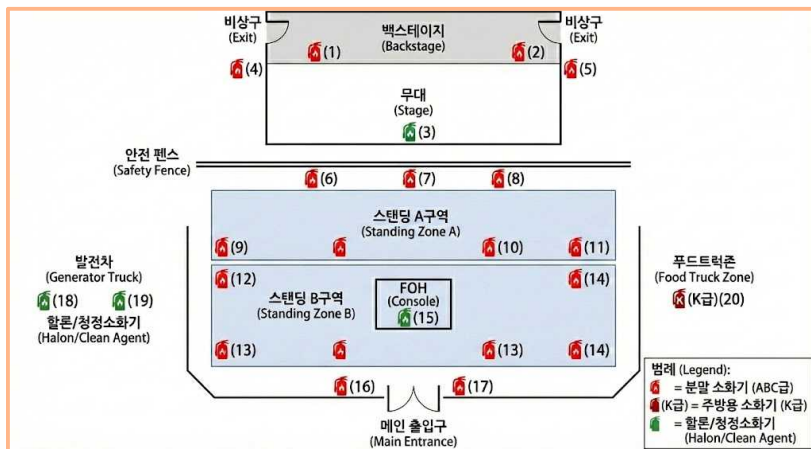
1 소화기 배치 계획

- 면적당 소화기 비치 기준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화기 비치 기준]

- 보행거리 20 m 이내에 소형 소화기 설치
- 바닥면적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공간별로 설치
- 위와 관계없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 (발전차, 전장품 주변, 화기 사용 부스 등에 설치)

- 공연장소에 소화기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배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제공 계획

- 공연 중 탈진, 압사, 낙상 등 다양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응급의료 제공 계획 예시

구분	주요 관리 내용 예시
현장 의료소	☐ 위치 : 메인 게이트 우측 (구급차 진입로 인접 구역) ☐ 운영 시간 : 공연 시작 1시간 전 ~ 관객 퇴장 완료 시까지
인력 및 장비	☐ 인력 : 응급구조사 2명 (사설 구급대) ☐ 장비 : 자동심장충격기(AED) 2대, 외상 처치 키트, 산소통, 이동형 들것, 휠체어
이송 차량	☐ 상주 위치 : 현장 의료소 옆 사설 구급차량 현장 상시 대기 ☐ 배치대수 : 1대 ☐ 배치시간 : 공연 시작 1시간 전 ~ 관객 퇴장 완료 시까지

- 관련 법령 및 기준

[응급의료 인력 등 배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3)]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른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 :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 응급이송수단 : 구급차등 1대

3 출연진 안전관리 계획

a) 출연진 차량 이동 동선 관리

- 출연진 차량 동선과 관객 이동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차량과 관객 간의 충돌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 차량 진출입로 및 하차 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이동 시 보행자 접근을 통제한다.

b) 대기실 안전관리 및 통제

- 출연진 대기실 및 백스테이지 주변에 관객 통제용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관객의 무단 침입을 방지한다.
- 대기실 입구에 전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c) 비상시 대피 전담 체계 구축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하게 유도할 대피 전담 안전관리요원(기타지원반)을 사전에 지정한다.
- 전담 요원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출연자 전용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비상시 즉각적인 대피를 지원한다.

4 지자체 합동점검 계획

-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 설치 완료 후 공연 시작 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가(구조, 전기, 가스 안전 등)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그에 대한 계획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2) 재해 유형별 세부 위험 요인과 그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1 화재 예방 및 관리 계획

- 화재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엄격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화재 요인에 따른 관리 항목과 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하게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일반 화재	- 공연 장소 내 가연성 물질 방치에 의한 화재 발생	☐ 천막, 커튼 등 가연성 장식물의 방염여부 점검 ☐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 인근 구역 순회 점검 ☐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에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상태 점검 ☐ 공연 장소 내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 반입 여부 점검 ☐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에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대기실, 텐트, 분장실 등에서의 화재 발생	☐ 해당 장소 내 전열기기 무단사용 금지 및 순회 점검 ☐ 해당 장소 내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상태 점검 ☐ 해당 장소 사용자 대상 전열기기 안전 사용 수칙 안내 ☐ 해당 장소 미사용 시 전원 차단 확인 ☐ 해당 장소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흡연에 의한 화재 발생	☐ 공연장소 전 구역(대기실 및 분장실 포함) 금연 조치 실시 ☐ 필요한 경우, 흡연부스 별도 운영 및 소화기구 비치 ☐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순회 점검 ☐ 흡연 감지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점검*
	- 공연장소 외부 화재 발생	☐ 공연장소 외부 화재 발생 시 신호 및 정보 전달 체계 점검 ☐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자 내부 훈련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일반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전기 화재	- 전기설비 결함에 의한 화재 발생	☐ 분전반 정기 점검 및 청결 유지 - 차단기 작동 상태 점검 - 탄화 현상 유무 점검 - 수분 침투 유무 점검 - 불필요물 비치 유무 확인 및 제거 ☐ 분전반 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 발전차 및 주요 설비(가설 구조물 포함) 접지 시공 상태 및 고정 여부 점검 ☐ 관계자 외 접촉 금지(주의표시) 및 잠금 상태 확인
	- 무대장치 과부하에 의한 화재 발생	☐ 무대장치 정격 용량 확인 및 수용 가능성 검토 ☐ 차단기 용량 적정성 점검
	- 임시 배선 설치상태 미흡으로 인한 화재 발생	☐ 배선 피복 손상 상태 점검 ☐ 배선 보호(전선 덮개 등) 상태 점검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 우천·습기에 의한 전기 설비 화재 발생	☐ 야외 콘센트·분전반·접속부는 방수형 사용 또는 방수 커버 설치 상태 점검 ☐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전기설비 사용 제한 기준 및 중단 절차 마련 ☐ 전기설비 주변에 물·음료 등 액체류를 두지 않도록 안내 및 순회 점검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전기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유류 화재	- 이동식 발전기 연료 (휘발유·경유) 및 난방용 유류에 의한 화재 발생	☐ 연료 보관 구역 지정 및 보관 상태 순회점검 ☐ 유류 보관구역 주변 '화기엄금·흡연금지' 표지 설치, 소화기 비치 및 정상상태 점검 ☐ 유류 저장소와 화기 취급 장소 간 안전거리 확보 여부 점검
	- 식음료 부스(푸드트럭) 가스 사용 부스의 관리 미흡에 의한 화재 발생	☐ 가스용기는 직사광선, 화기, 전기설비와 이격하여 세워 보관 ☐ 연결 호스·밸브·조인트부 누출·손상 여부 정기 점검 ☐ 식음료 부스 운영자에게 유류·가스 취급 안전수칙 및 긴급조치 요령 안내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유류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특수 효과 화재	- 불꽃 효과에 의한 화재 발생	☐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 사용 신고 유무 확인 ☐ 사용 전 설치 상태 점검 및 취급자 안전교육 시행 ☐ 소화기구 추가 비치 ☐ 효과 영향 구역 내 가연성 물질 제거 및 특수효과 사용 순서 점검(꽃가루 등 가연성 물질과 동시에 사용 금지 등) ☐ 위험구역 설정 및 작동 중 모니터링 ☐ 사용 후, 잔여 불씨 확인 점검
	- 화염 효과에 의한 화재 발생	☐ 가스 안전 수칙 준수 ☐ 사용 전 설치 상태 점검 및 취급자 안전교육 시행 ☐ 소화기구 추가 비치 ☐ 효과 영향 구역 내 가연성 물질 제거 및 특수효과 사용 순서 점검(꽃가루 등 가연성 물질과 동시에 사용 금지 등) ☐ 위험구역 설정 및 작동 중 모니터링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특수효과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 한함

2 지진 발생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 계획

- 지진 발생으로 인해 구조물 붕괴, 시설물 낙하, 전도 등으로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소에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평시 관리 항목과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시설물 붕괴·전도	- 가설 무대, 타워 구조물 등 붕괴 및 전도에 의한 사고 발생	☐ 무대 및 트러스 설치 시 구조 검토에 따른 적정 지지력 확보 상태(웨이트 설치 및 와이어 고정 상태 등) 점검 ☐ 구조물 하부 지반 침하 방지 조치 및 수평 유지 상태 점검 ☐ 전도 우려가 있는 시설물 주변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객 접근 제한
설치물 낙하	- 상부 설치물(조명, 스피커 등)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 무대 상부 설치물(조명기 등) 안전고리 체결 상태 점검 ☐ 클램프, 볼트 등 연결 부위 풀림 방지 조치 실시 및 상태 점검 ☐ 지진 발생 직후 여진에 대비하여 상부 구조물 아래 통행 통제
대피 및 인파 사고	- 관객 패닉 및 대피 중 혼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대피 경로 상 장애물 사전 제거 및 충분한 통로 폭 확보 상태 점검 ☐ 지진 발생 시 공연 중단 후, 위험구역 통제 및 관객 대피 절차(낙하물로부터 몸 보호(머리 보호) → 진동 멈춤 후 이동 안내 등) 마련 ☐ 안전관리요원 사전 교육(비상구 위치 숙지 및 관객 패닉 방지 등) 실시
2차 안전 사고	- 전기 누전 및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발생	☐ 지진 발생 시 주 전원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비상 체계 구축 ☐ 전원 케이블 단선 및 피복 손상 여부 확인 후 전력 재공급 ☐ 식음료 부스(푸드트럭) 가스 밸브 즉시 차단 및 누출 점검
기타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지진 발생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3 악천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계획

- 악천후(강풍, 호우, 폭염·한파 등)로 인해 구조물 전도, 미끄럼 사고, 관객 건강 이상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소에서 악천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고려한 관리 항목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강풍	- 공통 사항	☐ 순간최대풍속에 따른 공연 중지/취소 기준(구조 검토 풍속 기준으로 설정 권장) 및 절차 마련
	- 가설 시설물 붕괴 및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	☐ 강풍 예보 시 무대, 트러스, 텐트 등의 고정 상태 점검 및 보강 ☐ 강풍 예보 시 무대 상부 구조물 하강 조치 및 차양막 철거
	- 설치물 낙하 및 비래로 인한 사고 발생	☐ 텐트, 현수막, 무대 위 세트 설치물, 임시 의자 등 사전 제거 또는 결속 강화 ☐ 스피커, 조명 등 매달린 장비의 이중 안전장치 체결 상태 점검 ☐ 가벼운 소품 및 장비류 실내 이동 또는 결속 강화
폭우	- 공통 사항	☐ 강수량에 따른 공연 중지·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 전기 누전 및 감전 사고 발생	☐ 옥외 노출된 전선 접속부 및 콘센트 방수 조치 및 지면 이격 상태 점검 ☐ 분전반 및 음향/조명 콘솔 등 주요 장비 비가림막 설치 ☐ 침수 우려 시 메인 전원 차단 및 접근 통제
	- 지반 약화 및 배수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무대 및 객석 주변 배수로 사전 확보 및 이물질 제거 ☐ 미끄럼 우려 구간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 지반 침하로 인한 구조물 기울짐 여부 수시 모니터링
폭염	- 공통 사항	☐ 최고 체감온도 기준 및 폭염 특보에 따른 공연 일정·시간대 조정 및 중지·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 관객 및 종사자 온열질환 발생	☐ 공연장소 및 외부 대기공간에 그늘막(휴게 공간) 설치 및 쿨링포그, 대형 선풍기, 쿨버스, 쿨링존 등 배치 ☐ 식수(생수) 무료 제공 부스 운영 및 온열질환 응급처치 물품 구비 ☐ 야외 작업자 및 안내요원 교대 근무(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 마련
	- 장비 과열로 인한 사고 발생	☐ 앰프, LED 스크린 등 발열 장비 통풍구 확보 및 직사광선 차단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기타	- 낙뢰에 의한 사고 발생	☐ 낙뢰 예보 시 높은 구조물(조명 타워 등) 주변 접근 금지 ☐ 무대 및 주요 철골 구조물 피뢰침 설치 또는 접지 상태 확인 ☐ 낙뢰 발생 시 즉시 공연 중단 및 건물 내부나 낮은 지대로 대피 유도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악천후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4 구조물 안전사고(특수효과 포함) 예방 및 관리 계획

- 무대, 객석, 임시 구조물 및 특수효과 설비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구조물 붕괴, 낙하, 전도,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및 특수효과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한 관리 항목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소의 특성과 공연 내용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무대 및 가설 구조물	- 공통 사항	☐ 무대 설치 전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현장 점검 수행(사전 계획과 변경되어 설치된 경우 구조기술사 추가 검토 수행)
	- 구조물 붕괴 및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	☐ 트러스, 레이허 등 주요 구조재의 연결 핀, 볼트 체결 상태 및 전도 방지 상태 점검 ☐ 구조물 지지력 및 수평 유지 상태 점검 ☐ 구조물 주변 관객 접근 통제 상태 점검
	- 적재 하중 초과로 인한 사고 발생	☐ 주요 구조물(무대, 리프트, 트러스 등)별 최대 허용 하중 표시 ☐ 무대, 타워, 트러스 등에 과도한 중량의 장비 적재 금지 및 하중 분산 배치 ☐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타워 및 트러스 위 작업자 탑승 원칙적 금지 ☐ 구조검토서에 명시된 설계 하중 준수 여부 수시 점검 및 통제
무대 설치물	- 조명 및 음향 장비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 무대 상부 설치물(조명기 등) 안전고리 체결 상태 점검 ☐ 스피커 리깅 상태 및 체결장비 결속 상태 확인 ☐ 작업 변경 내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및 안전모 착용 상태 점검
	- 영상 장비(LED) 등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	☐ LED 스크린 지지 구조물의 무게중심 확인 및 후방 지지대 보강 상태 점검 ☐ 스탠드형 조명 및 스피커 전도방지 상태 점검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객석 및 안전 펜스	- 가설 객석 흔들림·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 가설 객석 설치 시 구조적 결합상태 점검 ☐ 가설 객석 설치 후 지지 상태(뒤틀림, 틈새, 변형 등) 점검
	- 펜스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	☐ 관객의 하중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는 전도방지 용 펜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안전 펜스간 견고한 결속 및 바닥 고정 상태 점검 ☐ 관객 혼잡 구역에 펜스 전도 방지를 위한 쓸림 현상 수시 모니터링
특수 효과	- 공통 사항	☐ 특수효과 시연 전 안내방송을 통해 관객 놀람 방지 및 주의 환기
	- 화약류 폭발 및 파 편 비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 화약류 발사 각도 확인 및 관객석 방향 발사 금지 ☐ 불꽃 낙하 예상 지점 및 안전거리(이격거리) 내 인원 통제 ☐ 불발탄 발생 시 즉시 접근 금지 및 전문가에 의한 수거·처리
	- CO2, 레이저, 워터 건 등에 의한 신체 상해 발생	☐ [공통] 특수효과 발사 장치 관계자 외 접근 금지 ☐ [공통] 유지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 및 오발방지 조치 후 작업 실시 ☐ [CO2] 분사구 인근 관객 접근 차단 ☐ [레이저] 관객 시력 보호를 위한 조사 각도 제한(눈 직사 금지) ☐ [워터건] 고압 분사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관객 얼굴 정 면 직사 금지
	- 무대기계 오작동으 로 인한 사고 발생	☐ 리프트, 텐테이블 등 구동부 끼임 및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실시 및 취급자 안전교육 시행 ☐ 기계 작동 중 비상정지 버튼 위치 확보 및 담당자 배치
기타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구조물 및 특수효과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5 관객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 관객 이동, 대기, 관람 과정에서 혼잡, 넘어짐, 압박, 건강 이상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소에서 관객 특성 및 관람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전사고를 고려한 관리 항목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소의 운영 여건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수용 인원	- 수용 한계 초과 입장 및 과밀로 인한 사고 발생	☐ 무대, FOH(콘솔), 사각지대를 제외한 실제 유효 관람 면적에 대한 수용인원 산출 ☐ 출입구 관객 계수 및 수용 인원 대비 입장 비율에 따른 관리 계획(입장 대기, 입장 중지 등) 수립
관객 입·퇴장	- 공통 사항	☐ [공통] 출입구 분리 운영 및 재입장 관리 계획 수립 ☐ [공통] 이동 통로(계단, 경사로) 조도 확보 및 미끄럼 방지 조치 ☐ [공통] 출입구 주변 적치물 제거 및 비상 대피로 상시 개방 상태 유지 ☐ [공통] 관객 입퇴장 경로에 차량을 사전 통제하여 차량과 관객 동선 혼재 방지(필요시, 경찰 및 모범운전자회 교통 통제 협조 요청) ☐ [공통] 출연진 동선과 관객동선 분리 운영
	- 입장시 관객 혼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입장] 수용인원에 따라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분산 및 개방 시간 계획 수립 ☐ [입장] 대기열 설치 및 구역별 순차 입장 유도 ☐ [입장] 혼잡 발생 예상 구간 등 주요 동선 안전관리요원 배치
	- 퇴장시 관객 혼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퇴장] 공연 종료 후 구역별 시차를 둔 단계적 퇴장시행 ☐ 인근 지하철 역장 및 버스 업체와 행사 종료 시간 및 예상 인원 공유 및 필요시 운영 연장 협의
스탠딩 공연	- 공통 사항	☐ 관객 혼잡으로 인한 탈진, 압박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공연 중지 및 즉시 구조 조치 계획 수립
	- 혼잡에 의한 압박·넘어짐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스탠딩 구역 구획 및 안전관리요원 접근을 위한 구역간 통로 확보 계획 수립 ☐ 구역별 적정 수용 인원 준수 및 실시간 혼잡 상태 모니터링 실시
	- 안전펜스 쏠림 및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	☐ 전도방지용 펜스가 아닌 경우 관객이 기대지 못하도록 안내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무대와 펜스 사이 완충 구역 확보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돌발 상황 발생	- 공통 사항	☐ 공연 중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공연 중단>Show Stop) 절차 마련
	- 출연자 및 관객 실신 사고 발생	☐ 상시 객석구역 모니터링 실시 및 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통로 상시 확보 ☐ 상황 발생시 현장 의료진의 응급처치 실시 및 119 신고 체계 구축 ☐ 구급차 등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 계획 수립
	- 출연자 및 관객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무대 앞 안전관리요원은 관객 방향 주시 교육 ☐ 무대 난입 시도자 발견 즉시 제지 및 퇴장 조치 ☐ 물병 등 위험 물건 투척 시 즉시 퇴장 조치 ☐ 출연자의 과도한 흥분 유도 등 금지 사항 사전 교육 실시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기타	- 미아 발생	☐ 미아 발생 시 인계 장소(안내소·미아보호소 등)와 신고·방송·보호자 인계 절차를 사전에 규정 ☐ 안전관리요원에게 미아 발견 시 행동요령(신원 확인, 보호 조치, 방송 요청 등) 교육 ☐ 입장 시 아동용 팔찌·스티커 등 활용(보호자 연락처 기재 등) 계획 수립
	- 기타 공연 장소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관객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6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 상기 항목 외에도 공연 운영 과정에서는 돌발 상황, 외부 요인, 시설 및 운영상의 복합적 원인으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안전사고를 고려한 관리 항목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 전·중·후 전 과정에 걸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위험 요소	관리 계획
대테러 및 보안	- 비인가 드론 비행 및 추락	☐ 행사장 상공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및 드론 비행 승인 여부 단속 ☐ 미승인 드론 발견 시 경고 방송 및 조종자 색출하여 퇴장 조치 실시
	- 차량 돌진 및 테러 위험	☐ 출입구에서 소지품 보안검색(반입금지 물품 검색) 실시 ☐ 의심스러운 방치 물건(폭발물 의심) 발견 시 '접근 금지 → 신고' 절차 수행 ☐ 주요 VIP 참석 시 경찰과 연계하여 순찰 계획 수립
보건 및 위생관리	- 집단 감염병 발생	☐ 감염병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립 ☐ 행사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및 방역 물품 확보 ☐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격리 공간으로 이동 및 귀가 조치
	- 집단 식중독 및 식품 위생 사고 발생	☐ 입점 푸드트럭 및 식음료 부스의 보건증 및 위생 교육 이수증 확인 ☐ 식음료 부스 음식물 보관 상태(냉장) 수시 점검 ☐ 식중독 발생 시 역학 조사 대비를 위한 판매 음식의 '보존 식(Sample)' 냉동 보관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5(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다음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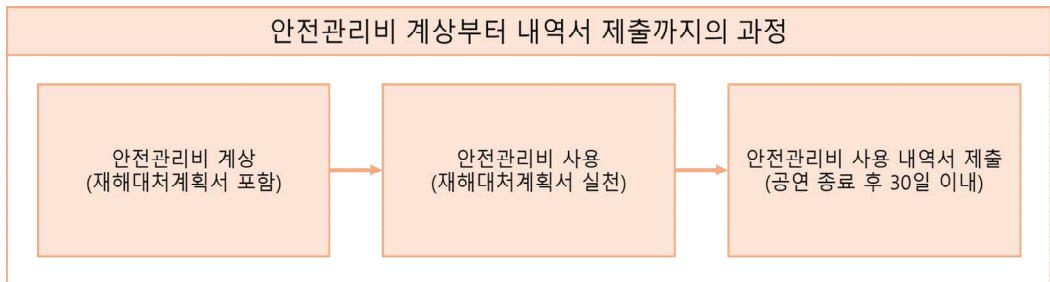
1)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공연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21% 이상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은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역에 따라 공연 기간 중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연 비용 산출 가이드

- 공연 비용은 공연을 기획·제작·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다. 만약 축제나 행사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공연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되기에, 그 예산 범위는 축제나 행사 운영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확실히 정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세부항목
인건비	기획·제작·진행에 따른 공연 조직원의 인건비
경상사무비	공연 전반에 걸친 행정적 업무에 대한 경상 사무비 (인쇄비, 통신비, 사무비용 등)
시설 및 장비 대여비	트러스, 의자, 조명, 음향 등 외부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때 소비되는 비용
시설유지·보수비	자체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공연제작비	공연 및 무대를 제작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공연사업비	공연자 출연료, 이동경비, 식대비 등에 소비되는 비용

3 안전관리비 산출 가이드

- 공연 진행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지출 비용 분석 : 안전관리비 계상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연 준비, 셋업, 진행 단계에서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다.

안전 관련 업무 예시
- 자체 안전점검 및 합동 안전점검 -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관리 - 안전 회의(공연 전 회의, 스태프 회의, 관객안전관리 회의 등) - 안전교육 및 훈련(관객 안내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 등) - 안전취약 시설, 장소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관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점검

-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 표의 안전관련 업무의 용도로 안전관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안전교육 및 훈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4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적정성 검토 및 제출

공연비용과 안전관리비가 정해지면, 아래의 공연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족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예상 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21% 이상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은 각 공연마다 예산 비목 및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양식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공연법에 따른 계상 비율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제출

- 신고한 내역에 따라 공연 기간 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비는 서류상 편성된 예산 항목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안전관리조직 구성

1 안전관리조직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 공연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조직 구성 관련

-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연 규모(예상되는 순간 최대 관람객 수)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1명	1명 이상
3천명 이상	1명	2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 현장의 공연 현장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위험 상황 시 공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 현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전관리조직 지정 이력 및 업무 수행 계획

-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은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계획

1 안전교육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관련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경우 자격이 있는 강사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시키거나 외부 전문기관(공연안전지원센터)으로부터 교육을 이수받고 수료 현황을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계획

- 공연자는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는 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자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연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은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교육 대상에는 출연자뿐만 아니라 스태프 및 작업자도 포함된다.(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연자 안전 현장 교육 안내서』참고)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자 안전교육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영상 자료 콘텐츠 제공과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연안전지원센터 및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공연자 안전교육은 55분 과정으로, 공연 전에 5분 이상 현장 시설 및 공연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4 안전관리요원(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시행 계획

- 안전관리요원 및 관객안전요원의 경우 안전교육 시행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안전을 위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의 내용 예시

- 공연장소 위험요인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 공연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소방 및 대피시설 안내(소화기 위치, 대피경로 및 피난유도 등 관리안내)
-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 계획 전달
- 구역별 안전관리요원 임무 및 대응요령 안내
- 관객 유형에 따른 위험성과 주의사항
- 그 밖에 공연장소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피난안내

1 피난안내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5

- 공연법 제1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관객 피난경로 설정 및 피난안내도 설치

-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시설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 비상 시 관객 피난경로를 지정한다. 또한, 공연을 하려는 장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피난경로를 도식화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피난안내도 형태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3. 피난안내 실시 계획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에 적합한 피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객 대피로와 출연진·스태프 대피로가 중첩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긴급 차량(소방차 및 구급차 등)과 대피 인파가 혼재되지 않도록 객석 구역별로 비상대피경로를 설정하여 피난안내시 제시해줄 것을 권장한다.

- 피난안내 방법 : 공연을 하는 장소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피난안내 시기 : 관람객이 공연을 하는 장소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 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 · 피난통로 · 비상구 · 하강기 · 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 · 노인 · 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4 재해 취약층 관객 피난 계획

- (노인과 어린이 관객 피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여 공연을 관람하더라도 비상시 혼잡상황에서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공연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휠체어 이용 관객 피난) 휠체어 등 이동 보조 수단을 이용하는 관객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 휠체어 대피경로를 파악하여 안내하도록 조치하며, 긴박한 상황 등 휠체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 지원 인력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외부 장소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 (장애 유형에 따른 안내요원 배치)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경우, 다음의 장애 유형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비상 대피를 지원한다.

장애 유형	비상 대피 지원 계획
시각장애	안내요원 1명이 2명의 시각장애인을 담당하여 대피
지체장애	안내요원 1명이 1명의 지체장애인을 담당하여 대피 (단,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안내요원 1명당 2명 담당)
청각장애	안내요원 1명이 4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하여 대피
기타 (스스로 대피 가능한 자)	비상집결지까지 대피 유도

5 공연 장소에서의 퇴장(대피) 경로 안내 계획

- (퇴장 경로 안내 - 통로유도표지) 관객 이동의 혼선을 줄이고 비상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객석 공간에서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의 퇴장 경로의 방향이 명확하게 식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 표지의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 (퇴장 구역 위치 안내 - 출구 안내표지 또는 피난구유도표지) 종합운동장과 대형 체육시설 등의 바닥 객석 공간, 광장 및 공원 등 평지 형태의 객석 공간에서 퇴장 구역을 명확하게 식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 표지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대피경로 안내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사항	유도 표지 설치 가이드
관객 퇴장 경로 중 갈림길이 있는 경우	- 퇴장 계획에 따른 출입구 위치로 이동 방향을 알리는 유도 표지 설치
공연을 위해 일부 통로를 통제해야 하는 경우 *기존 통로를 통제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와 피난 계획에 관한 추가 협의 필요(비상시 대피경로가 차단되지 않아야 함)	- (퇴장 시) 통제구역을 우회하는 이동 방향을 알리는 유도 표지 설치 - (대피 시) 통제구역 개방 후, 안전관리인력이 비상구 방향으로 분산 대피 유도
공연 구조물 등으로 인해 객석 구역에서 기존 유도등의 시야 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단,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은 없어야 함	- 시야 방해가 되는 구조물에 유도등 추가 설치 - 관객의 지정 관람 공간에서 비상구 위치를 원활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 등 설치 (기존 유도등과 간섭되지 않아야 함)
지정 관람 공간에서 기존 유도등 설비로는 비상구 위치의 식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관객의 지정 관람 공간에서 퇴장 게이트 또는 비상구 위치를 원활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 등 설치 (기존 유도등과 간섭되지 않아야 함)
넓은 평지에서 관람 공간 구획 시, 출입구의 위치 식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관객의 지정 관람 공간에서 퇴장 게이트 또는 비상구 위치를 원활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 자이언트 배너 등 설치

- (유도 표지 설치 위치) 유도 표지는 객석 공간 내 어느 위치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객이 이동 중에도 가림없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현수막, 배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공연 스크린을 활용한 퇴장 안내) 공연 종료 후, 원활한 관객 퇴장을 위해 퇴장 안내 영상매체를 송출하여, 관람 구역별 퇴장 순서와 퇴장 경로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6.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시설 설치 및 해체 과정은 다양한 작업이 단계별·동시에 이루어지며, 각 작업은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대처계획서에는 작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후 장에서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주요 작업 구분

① 작업 구분 작성 방안

작업구분은 이후에 제시될 작업별 위험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방안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전체 작업 프로세스 기준으로 작업 구분 : 무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은 반입 → 설치 → 운영 → 해체 등 프로세스 기준에 맞춰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 작업단위의 명확한 구분 : 예를 들어 '자재 반입 및 하역', '무대 세트 제작', '리깅 및 상부 작업', '음향·조명·영상 장비 설치'와 같이 작업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후 안전관리 방안의 구체화를 용이하게 한다.
- 위험요인이 상이한 작업은 분리하여 구분 : 예를 들어 하역 작업은 주로 충돌·전도·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리깅 및 상부 작업은 추락과 낙하물 위험이 주요 위험요인이다. 이처럼 위험요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항목으로 묶어서는 안 되며,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관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② 작업 구분 예시

- 자재 반입 및 하역
- 구조물 설치(트러스·레이허 등 임시무대 구조물)
- 리깅 및 상부 작업
- 음향·조명·영상 장비 설치
- 무대 바닥(데크) 설치
- 특수효과·전기·발전기 설치

- 기타 부대시설 설치(텐트, 백스테이지 등)
- 해체 작업(설치 작업의 역순)

2) 작업별 안전관리 계획

1 작업별 안전관리 계획 작성 방안

- 작업별 안전관리 계획은 앞에서 구분한 작업에 대해 각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작성 시에는 단순한 선언적 표현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행동중심·절차중심 관리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인 경우 환경적 변수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업별 안전관리 계획 예시

작업구분	안전관리 계획
공통사항	☐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 작업구역 출입통제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작업중지 절차 마련 ☐ 실시간 풍속 측정 및 작업 중지 기준 마련(예 : 5m/s → 고소작업 중지, 8m/s → 전체 중지) ☐ 야간 작업 시 충분한 조도 확보(작업등·이동식 조명) ☐ 고소 작업자는 안전대 등 추락방지 보호구 필수 착용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아웃리거 완전 전개 및 지반 안정 확인
자재 반입 및 하역	☐ 전용 반입구·하역장을 이용하고 출입·동선 관리요원 배치 ☐ 하역 시 끼임·전도 방지를 위해 하역구역 내 비관계자 출입 통제 ☐ 백스테이지·로비 등 이동로 확보(적치 금지·폭 유지) ☐ 지게차·운반 장비 사용 시 운전수 자격요건 확인 및 신호수 배치 등 작업 자간 신호체계 운영 ☐ 계단·경사부 등 위험 구간의 보조요원 배치
구조물 설치	☐ 구조물 설치 전 구조기술사에게 구조물 안전성 검토 실시 ☐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베이스판 설치 ☐ 설치 순서 준수(기둥 고정 → 트러스 결합 → 보강재 설치 등) ☐ 낙하물 위험구역 설정 및 일반인 접근 통제 ☐ 구조물 설치 후 구조기술사에게 설치 상태 점검 실시 ☐ 구조물 설치 후 적절한 접지 설치여부 확인

작업구분	안전관리 계획
리깅 및 상부 작업	☐ 상부 작업자는 안전대 등 추락방지 보호구 필수 착용 ☐ 체인호이스트·모터 사용 시 상·하부 작업자 간 무전기 또는 육성 신호체계 구축 ☐ 상부 작업 중 하부는 전면 통제(상부 및 하부 동시 작업 금지)
음향·조명·영상 장비 설치	☐ 상부 트러스에 설치되는 조명기 등은 안전고리 체결 ☐ 임시 분전함·발전기 전력용량, 접지저항 사전 확인 ☐ 우천 대비 방수 커버 설치 ☐ 장비 발열 구역에 가연물 적치 금지
무대 바닥 설치	☐ 높낮이 조절용 받침 철물 및 지반 침하 방지판 설치 ☐ 무대 바닥 꺼짐 여부 및 수평 상태 확인 ☐ 출연자 및 스태프 이동 동선 내 미끄럼 방지 조치 실시 ☐ 무대 진입로 및 모서리 구간에 야광 식별 표시 설치 절차를 사전에 규정
특수효과·전기·발전기 설치	☐ 특수효과의 안전거리 확보 및 불연재 바닥재 설치 ☐ 불꽃 등 화약류 사용시 사전 허가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지정 확인 ☐ 발전차 및 전기시설에 적절한 접지 설치 및 접근 통제 조치 실시 ☐ 비·습기 대비 전기설비 방수 조치 ☐ 특수효과 설치 장소 및 전기 시설 등에 소화기 비치(전장품 주변 청정·할론 소화기 배치 권장)
기타 부대시설 설치	☐ 텐트 등 부대시설 설치 시 강풍 대비 앵커링 또는 웨이트 설치 ☐ 백스테이지 장비 적치 시 피난통로·작업동선 확보 ☐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설치
해체 작업	☐ 해체 단계는 설치 순서의 정확한 역순으로 진행 ☐ 구조물 해체 전 전원 차단·고정 해체·하중 제거 ☐ 고소작업 및 상부 해체 시 풍속 기준 준수 ☐ 부재 하강 시 하부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 해체 자재는 즉시 규칙적으로 적치하여 전도·넘어짐 방지 ☐ 최종 정리 후 지면에 남은 위험요소(핀, 볼트, 케이블) 제거
- 기타 무대시설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참고] 무대시설 설치 및 해체 시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 유의 사항

- 고소작업, 크레인, 지게차 사용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규정을 따라 작업자와 관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 특히, 야외 광장 등 공연 및 작업 구획의 경계가 불명확한 장소에서의 건설기계 활용 시, 일반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구역의 통제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등)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 배치계획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은 공연 전 과정(입장, 공연 중, 퇴장, 비상 상황)에서 관객·출연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다. 재해대처계획서에는 단순히 인원 수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의 유형 구분, 임무의 적정성, 근무수칙, 단계별 배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대처계획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

① 공연 요소별 특성 고려

-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은 단순히 관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연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 요소	요소별 특성 및 예시
공연 유형 및 관객 성향	[동적인 공연] - 관객의 이동성 및 흥분도가 높고 신체 접촉, 뛰기, 때창 등이 예상됨 - (예시) 무대 앞 펜스 및 객석 사이 통로구역에 안전관리요원 증원
	[정적인 공연] - 관객의 이동이 적고 차분한 분위기가 예상됨 - (예시) 객석 안내 및 편의를 돕는 안내요원 배치
장소적 여건 및 환경	[야외 공연] - 객석 및 공연 장소 경계가 불분명하고 대부분 스탠딩 공연이 예상됨 - (예시) 공연 장소와 외부 경계 구역 통제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인력 배치
	[실내 공연] - 관객 수에 비해 출입구 수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예시) 비상구 및 병목 구간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입장 방식	[무료 및 선착순 공연] -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밤샘 대기 관객간 물리적 충돌 발생이 예상됨 - (예시) 대기열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및 24시간 순찰 인력 증원
	[사전 예매 및 지정석 공연] - 입장 절차(본인 확인, 검표) 지연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됨 - (예시) 관객 수를 고려한 출입구 게이트 안내요원 증원

고려 요소	요소별 특성 및 예시
주류 판매 여부	[주류 판매 공연] - 주취로 인한 공격성 증가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 (예시) 공연장소 순찰 및 주취자 대응 전담 안전관리인력 배치
기타 위험 요소	- (예시) 특수효과 사용시 해당 구역 접근 통제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 (예시) VIP 참석 시 주요 인사 경호 및 동선 확보를 위한 전담 안전관리요원 배치

2 인력 유형별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공연 요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을 구분하고 인원 수를 산정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유니폼 및 형광색 조끼를 착용하여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 공연 당일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인력의 약 5~10%를 예비 인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인력 유형	대상	운영 계획 예시
전문인력	경비업법에 따른 전문 경호업체 소속 유자격자	무대 앞, 대기열, 객석 사이 통로, 백스테이지, 주 출입구(검색대) 등 관객 사고 위험 구역에 배치
지원인력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내 및 운영요원 또는 자원봉사자	관객 입장 동선, 로비, 티켓부스, 물품보관소 등 관객 안내가 필요한 구역에 배치

-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 예시

구분	책임자	인원	기준	비고
전문인력	업체명 : 00000 000, 000-0000-0000	00명	관객 약 000명 당 전문인력 0명 배치 (관객수/투입인원)	투입인력
지원인력	업체명 : 00000 000, 000-0000-0000	00명	관객 약 000명 당 지원인력 0명 배치 (관객수/투입인원)	투입인력

2) 안전관리인력 배치 계획

1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배치 계획 수립

-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은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관객 이동 경로와 관계자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입구역에서부터 객석구역까지 관객 접근이 불필요한 곳과 위험 통제 구간은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객 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인력을 배치시켜야 한다.

	대상	배치 계획 예시
통제구역	무대, 백스테이지, 발전차 인근, 출연진 대기실 등	전문인력 고정 배치, 관계자 비표 소지자 외 전면 통제
혼잡구역	주 출입구, 티켓부스, 입장 대기열, 스탠딩 구역 등	전문인력과 지원인력 합동 배치, 대기열 관리 및 관객 혼잡도 모니터링 실시
기타구역	좌석 구역, 로비 등	지원인력 위주 배치, 구역별 담당자 지정하여 관객 불편 해소 및 특이사항(응급환자 등) 전파

2 시간적 특성을 반영한 배치 계획 수립

-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은 공연장소의 공간적 특성뿐 아니라, 공연 진행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적 특성을 반드시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관객의 밀집 양상과 이동 패턴은 입장 단계, 공연 진행 단계, 퇴장 단계, 비상상황 발생 시점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원과 역할을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입장 시

주요 상황	- 관객이 출입구, 대기열,检표·검색 구역에 집중 - 스탠딩·열광적 공연일수록 대기열에 혼잡도 증가
전문인력 배치 계획	- 출입구, 대기열, 계단·경사로 등 혼잡·전도 위험 구간에 집중 배치 - 출입문 통제, 대기열 및 혼잡도 관리, 위험행위(뛰기, 밀기) 제지
지원인력 배치 계획	- 출입구 주변, 로비, 대기열에 배치 - 줄 세우기, 대기열 정리, 예매 안내, 우회 동선 안내 - 관람·안전수칙 사전 안내

• 공연 중

주요 상황	- 관객이 주로 객석 구역에 머물지만 화장실·편의시설 이용 등으로 일시적 혼잡 발생 - 스탠딩 공연일 경우 출연자에 따라 순간적으로 특정구역에 몰림 현상 발생
전문인력 배치 계획	- 객석 통로, 계단, 스탠딩 구역, 무대 전면, 구조물 인근에 배치 - 관객 혼잡도, 위험행위(무대 접근, 과도한 밀착 등) 상시 모니터링 - 일부 인력은 비상상황 대응 전담 인력으로 지정
지원인력 배치 계획	- 좌석·구역 안내, 화장실·편의시설 이동 동선 안내 - 통로 체류, 통행 방해, 위험행위, 관람 에티켓 사전 안내 - 종합 안내소 등에서 관람객 불편 사항 상시 대응

• 퇴장 시

주요 상황	- 관객이 단시간에 출구·계단·외부 동선으로 몰리며 병목 및 압박 위험 증가 - 관객 퇴장 동선과 차량 동선이 혼재되어 위험 증가
전문인력 배치 계획	- 공연 종료 전부터 출구, 계단 상·하부, 주요 교차 동선에 미리 배치 - 출구 주변 관객 흐름 조절, 밀집·정체 구간 관리 - 위험지점(계단, 좁은 통로, 경사로 등) 집중 관리
지원인력 배치 계획	- 출구 방향·우회 동선·부출입구 안내 - 관객 분산 유도, 한꺼번에 몰리는 구역 완화 - 대중교통·주차장 등 외부 동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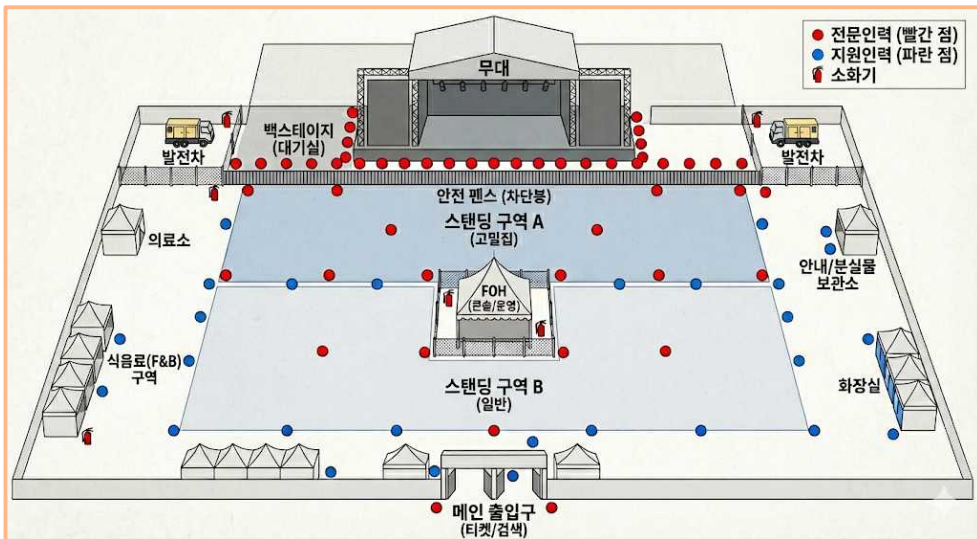
• 비상 시

주요 상황	- 화재, 구조물 붕괴, 관객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비상 모드로 전환 필요
전문인력 배치 계획	- 비상대응 전담 인력 사전 지정(대피 유도, 위험구역 통제 담당) - 비상 출구·임시 개방 출구, 집결지 인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배치 - 외부기관(소방·경찰·구급대) 진입로 확보 및 현장 안내
지원인력 배치 계획	- 대피 안내 방송·표지와 연계하여 관객 대피 유도 보조 - 관객 패닉 완화, 유입 차단 등 관객 진정 보조 - 외국인·노약자 등 취약 관객에 대한 추가 안내

3 안전관리인력 배치도 작성

안전관리인력 배치도는 공연장(또는 야외·특설무대)의 평면을 기준으로 어디에, 어떤 유형의 인력을, 몇 명 배치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다. 배치도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와 범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실제 구조(출입구, 계단·경사로, 통로, 객석, 무대, 비상구, 임시구조물 등)를 반영한 평면도 사용
- 안전관리요원 / 안내요원 / 책임자를 기호·색으로 구분
- 입장 시 / 공연 중 / 퇴장 시 / 비상 시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배치도 작성
- 안전관리인력 배치도 예시



3) 안전관리인력 관리 계획

안전관리인력 관리 계획은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교육·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으로서, 재해대처계획서에는 단순 배치뿐 아니라, 근무수칙, 교육, 보고체계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임무 및 근무수칙 교육 계획

- 인력 유형·구역별 임무 문서화
- 주요 구역별로 구역 책임자 지정하여 해당 구역 인력 관리
- 공연 전 안전교육 및 TBM을 통해 인력별 임무 및 근무수칙 교육 및 숙지 상태 점검

2 지휘 및 보고체계 계획

- 일반적으로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구역 책임자 ↔ 안전관리인력의 지휘 체계 및 보고 설정
- 무전기 등 통신수단 사용 방법, 채널, 호출 방식 등을 사전 지정
- 이상 징후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관리 계획에 명시

4) 안전관리인력 배치 기준 예시 및 유의사항

안전관리인력의 수는 원칙적으로 관객 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보다는, 공연 유형, 장소 특성, 관객 성향, 구조물·특수효과 설치 여부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위험요소별 인력 산출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용 예시로 활용하여야 한다.

유형	좌석 운영방식	안전관리인력 배치 기준 예시
A 야구장	좌석 + 스탠딩석	관객 수 대비 1% 이상(소규모), 1.5% 이상(중·대규모) 총 인력 대비 전문인력 20% 이상 배치
B 경기장	좌석 + 스탠딩석	관객 수 대비 1.5% 이상
C 경기장	좌석	관객 수 대비 1.0% 이상
D 지자체 조례	상관없음	관객 수 대비 1.0% 이상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 이수자 우선 배치)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은 각 공연 장소의 구조, 운영방식, 과거 경험 등을 전제로 한 장소 고유의 내부 기준이므로, 이를 다른 공연이나 다른 장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본 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은 예시이며, 실제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 시에는 위험요소별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 또는 추가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을 대관하는 장소에 자체적인 안전관리인력 배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대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대관 장소의 대관 규정·안전관리 지침에 명시된 최소 배치 인원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최소 준수 기준으로 삼되, 본 공연의 위험요소(공연 유형, 장소 특성, 관객 성향, 구조물·특수효과 설치 여부 등)를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확보·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8.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다중의 관객이 동시에 운집하는 공연에서는 관객 밀집, 이동 동선 충돌, 돌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넘어짐, 압박, 압사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최대 관객 수용인원 산출

① 객석 구역 최대 수용인원

- 객석 구역 최대 수용인원은 아래 표에 따라 적용된 좌석 형태의 **산출 값의 합계 [A+B]**와 **이동 경로 폭에 따른 산출 인원[C]** 중 적은 인원으로 적용한다.
- 공연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객석 구역의 최대 수용인원을 산출하여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최대 수용인원의 초과 입장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분		수용인원 산출 가이드
지정 좌석 [A]	고정 의자	- 객석 고정 의자의 총 수량
	이동형 의자	- 좌석 통로(좌석 전·후 간격 0.85 m 이상)와 객석 통로 확보 후,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의자의 총 수량 ※ 관련 근거 : 공연장 조성 매뉴얼 <표11> 객석의자 표준 고려사항
비지정 좌석 [B]	스탠딩 관람 구역	-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객석 구역의 수용인원은 객석 바닥면적(펜스 설치 면적 등 제외) 1 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용인원을 산출하도록 한다. ※ 관련 근거 : 입석 관람객을 위한 최대 권장 밀도 준용,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6th edition
	벤치형 좌석	- 긴 의자 형태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 m로 나누어 얻은 수로 산출한다. ※ 관련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이동 경로 폭 [C]		- (계단을 포함하고 있는 출구) 출구 폭 7.6 mm당 1명 /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 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 폭 5.1 mm당 1명 - (평지에서의 출구) 출구 폭 5.1 mm당 1명 /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 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 폭 3.8 mm당 1명 ※ 관련 근거 : IFC section 1005, Means of Egress Sizing (피난로의 용량 산정)

2 스탠딩 관람 구역의 안전 관리

- (스탠딩 관람 구역 수용 인원) 스탠딩 관람 구역의 수용인원은 해당되는 객석 바닥 면적(펜스 설치 면적 등 제외) 1제곱미터당 4명¹⁾으로 하여 산출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 분리) 열광적인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는 스탠딩 관람 구역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탠딩 관람 구역 분리 계획 수립 시, 다음을 참고한다.

※ 철저한 관객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예시

- 관객 관리 인력의 모니터링 : 모든 관객의 이상 행동과 증상 등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함
- 관객 사고 시 공연 중단 체계 확보 : 관객 사고 발생 시, 관객 관리 인력이 사고 발생 위치까지 신속히 이동하고, 관객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통제 관리 체계 확보 필요
- (스탠딩 관람 구역의 출입구 폭 기준) 스탠딩 관람 구역의 인원 1명당 출입구 폭 5.1 mm를 적용한다. 단, 출입구의 최소 폭은 1.5 m²⁾ 이상으로 한다. [500명을 수용하는 스탠딩 관람 구역의 출입구 너비의 합계는 2,55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적용 시에는 각 출입구의 너비는 1,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의 정보 표시) 스탠딩 관람 구역의 출입구에는 다음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에 표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

- 구역 식별 표시 : 스탠딩 관람 구역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으면, 구역이 식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관람석 입장 구역에서 위치 식별이 되도록 높은 표지판 또는 깃대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최대 수용인원 정보 : 스탠딩 공연 출입구에는 스탠딩 구역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 공연 주의 사항 : 공연 중 관객을 밀거나, 안전 펜스 위에 올라가는 등의 위험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의 관객 밀집도 관리) 스탠딩 공연 구획 내에서도 공연 중에 무대와 가까운 쪽에 관객 밀집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파 밀도 ³⁾	안전관리 내용	공연 중 조치 가이드
4~6명/m ² 이하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실행함	-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현장 통제 관리 실시
6명/m ² 초과	- 인파사고의 위험이 있음	- 공연 일시 중단 후 안내방송으로 밀집도 해산 조치

1) 참고 :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6th edition, 입석 관람객을 위한 최대 권장 밀도 준용

2) 참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3) 참고 :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표4-15> 인파사고 위험도

3 최대 관객 수용인원 정보 제공

- 공연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같이 공연의 형태와 관람 유형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및 관객을 모객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자는 산출된 최대 관객 수용 인원을 공연시설 및 장소 입구에 게시하는 등 관객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2) 관객 입·퇴장 계획에 관한 사항

관객의 입장, 퇴장, 비상 대피 과정은 혼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 관객 대기 계획

- 공연 입장 전, 관객 대기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비지정 좌석이거나 선착순 관객 입장이 가능한 공연에서는 대기 관리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주요 관리 내용
대기열 관리	☐ 대기 공간 확보 및 구획 - 티켓 부스와 입장 게이트 간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 차단봉(벨트)을 설치하여 'ㄴ'자 형태로 대기열 조성 ☐ 사전 인원 관리 -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안전요원 배치하여 새치기 및 도로 침범 통제 - 예상 대기 인원 초과 시 예비 대기 공간으로 유도
비지정 좌석 및 선착순 관객 대기 관리	☐ 대기 가능 시간과 입장 방법 사전 안내 - 대기 가능 시간 지정과 대기 시간 외 줄서기 관객 등에 대한 통제 ☐ 입장 순서 지정 및 관리 - 입장 순서표 온라인 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 - (온라인 발행이 어려운 경우) 예상 인원 수를 고려한 대기열 추가 확보 및 안전관리인력 배치

2 관객 입장 계획

- 입장 시간 분산, 출입구 분리 운영, 대기열 설치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관객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입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관객 입장 계획 예시

구분	주요 관리 내용
입장 절차	☐ 소지품 검색 및 검표 - 반입 금지 물품(홍기, 유리병 등) 검색대 운영 (전문 보안요원 배치) - 검색 → 검표 → 입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일방통행으로 유지
	☐ 분산 입장 유도 - 관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게이트를 3개소 이상 분산 운영 - 스탠딩 구역은 입장 번호순으로 50명 단위 끊어서 순차 입장 유도
안전 사고 예방	☐ 뛰어가기 방지 - 입장 개시 직후 뛰는 관객에 대한 제지 및 퇴장 조치 경고 - 이동 통로 주요 지점(계단, 경사로)에 감속 유도 요원 배치
	☐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우선 입장 게이트(Fast Track)' 별도 운영

3 관객 퇴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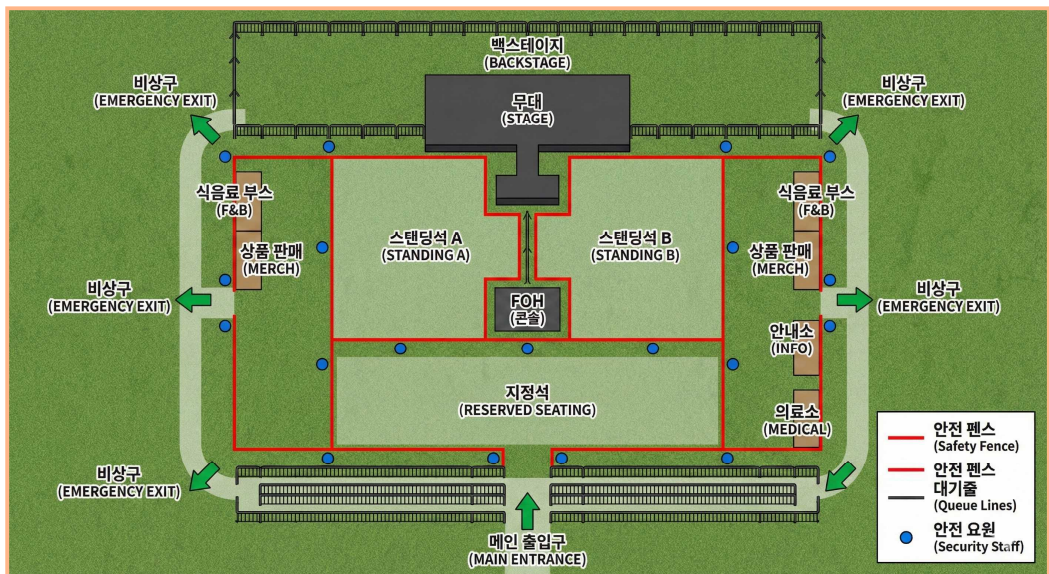
- 공연 종료 후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구역별·시간대별 단계적 퇴장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관객 퇴장 계획 예시

구분	주요 관리 내용
단계적 퇴장	☐ 구역별 순차 퇴장 시행 - 사회자의 안내 멘트에 따라 출구와 가까운 구역부터 퇴장 - (예시) C구역 → B구역 → A구역 순으로 3~5분 간격 퇴장 유도
	☐ 퇴장 방송 송출 - "밀지 마시고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 퇴장 동선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 정보 송출
동선 및 시설 관리	☐ 비상구 전면 개방 - 주 출입구 외 비상구 2개소를 임시 퇴장로로 추가 개방하여 인원 분산
	☐ 위험 요소 제거 - 퇴장로 조도 확보(조명 타워 가동) 및 바닥 전선/적치물 제거 - 계단 및 경사로 등 낙상 위험 구간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
외부 연계 관리	☐ 차량 통제 및 보행로 확보 - 관객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행사장 진입로 차량 통행 전면 통제 - 인근 차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및 교통 수신호 실시
	☐ 대중교통 인파 관리 - 인근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 사전 협조 및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질서 유지 - 역사 내 혼잡 시 역사 진입 통제 및 우회 교통편 안내

3) 관객 혼잡 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1 공연시설 및 객석 구획 계획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사장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울타리·펜스 등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충분한 완충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펜스 설치 및 공간 구획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공연 시설 및 객석 구획 계획 예시



2 관객 혼잡 구역 및 접근 위험 관리 계획

- 공연 운영 과정에서는 출입구, 통로, 계단, 무대 전면, 편의시설 주변 등 특정 구역에 관객이 집중되어 관객 혼잡 또는 접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잡 및 접근 위험구역을 사전에 식별·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인원 밀집도 관리, 동선 통제, 안내 및 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객 혼잡 위험 구역 관리 계획 예시

관객 혼잡 예상 구역	대상 구역	관리 계획
스탠딩 구역	무대 앞 펜스 구간, 스탠딩구역	밀집도 4인/m ² 초과 시 즉시 유입 차단
이동 동선	주 출입구, 계단, 경사로, 병목 구간	보행 속도 1m/s 이하 저하 시 우회 유도
대기 공간	티켓 부스, MD 부스, 화장실 대기열	대기열이 주 동선을 50% 이상 점유 시 대기 중단

- 관객 접근 위험구역 관리 계획

위험구역	관리 계획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당 도로 통제
특수효과 연출지점	출입 차단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발전차, 배전반	바리케이트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또한 혼잡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동선 분리, 흐름 조정, 관객 분산 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 배치계획」에 반영한다.

2 공연 중단 계획

- 인파 사고 징후가 감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공연을 즉시 중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2) 공연 중단 관리 계획」 참고

3 위험 상황 안내방송 계획

- 혼잡 상황 발생 시 관객의 불안과 패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 방송 문구와 방송 시점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다.
- 위험 상황 안내방송 예시

상황	안내방송 예시
관객 혼잡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00구역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주변 분들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금씩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압사 위험	긴급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앞쪽 구역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위험합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이동을 멈추고, 뒤쪽 구역 관객부터 천천히 뒤로 이동해 주십시오. 앞사람을 밀지 마시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절대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 조치

-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비상 대응 조직별 행동요령은 본 안내서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에 따른다.